

2026

가축인공수정사 등 축 산 법

엠북 축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완성

도서명 : 축산법

ISBN : 979-11-7393-090-4

발간일 : 2025-10-15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6,500원



축산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p13)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p25)

제4장 가축시장,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p57)

제5장 축산발전기금(p93)

제6장 보칙(p101)

제7장 벌칙(p105~113)

[약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사유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사는 축산물품질평가사

정액등은 정액, 난자, 수정란

처리업은 정액등처리업

처리업체는 정액등처리업체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4조

1. 목적

- 가축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규정
-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 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

2. 정의

가. 가축

- 사육하는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 이외 장관이 고시하는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
- 염소는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유산양 포함

나. 토종가축

- 한우, 돼지, 닭(토종닭), 오리, 말, 꿀벌 중

예로부터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 지닌 가축

다. 종축

- 가축개량,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 등록**
하거나 가축 검정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가축

라. 축산물

-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젓,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 부산물,
로얄제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수벌의
번데기

- 원피는 가공 전 가죽. 원모피 포함

마. 축산업

- 종축업, 부화업, 처리업, 가죽사육업

1) 종축업은 종축 사육, 종축에서 다음 번식용
가축, 씨알을 생산해 판매(다른 자에 사육
위탁하는 것 포함)

- 돼지, 닭, 오리

-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종계/종오리 고유의 특징 가진 알

- 가축전염병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

- 2) 부화업은 닭, 오리, 메추리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자에 사육 위탁하는 것 포함)
- 3) 처리업은 종축에서 정액등을 채취/처리해 판매
- 4) 가축사육업은 판매 목적으로 가축 사육, 젖/알/꿀 생산

바. 축사는 가축 사육을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 시설과 다음 부속시설

- 사육시설, 소독/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 배출시설로서 허가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 가축분뇨 처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설치하는 장관 고시 시설

사. 가축거래상인(이하 상인)

- 소/돼지/닭/오리/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구매, 거래를 위탁받아 3자에 알선/판매, 양도(이하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는, 등록된 자

아. 국가축산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

-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위해 형성한 집합체

자. 축산환경

- 축산업으로 사람, 가축에 영향 미치는 환경, 상태

3.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 장관은 축산 발전에 필요한 다음 계획과 시책 종합 수립/시행

- 가축 개량/증식
- 토종가축 보존/육성
- 축산환경 개선
- 축산업 구조개선
- 가축/축산물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이용촉진
- 사료의 안정적 수급

- 축산 분뇨 처리, 자원화
- 가축 위생

나) 국가등은 상기 시책 수행 사업비
전부/일부를 예산내 지원 가능

4.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축산발전시책 심의를 위해 장관 소속으로
둔다

나) 구성

- 관계 공무원
- 생산자/생산자단체 대표
- 학계, 축산 업계 전문가 등

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과위

설치/운영 가능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5~21조

1. 개량목표의 설정

가. 장관은

1)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해 가축
개량목표 설정, 고시 요

2) 개량목표 달성,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축산 기관/단체 중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 지정 요

3) 가축개량추진계획 시행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 지원 가능

나. 시도지사는 개량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가축개량추진계획 수립/시행 요

2. 시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가능

3. 장관은 개량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
기관/단체 중 등록기관을 지정해 **가축** 혈통,
능력, 체형 등을 심사해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가축의 검정

: 장관은 가축 능력 개량 정도 확인/평가를 위해 축산 기관/단체 중 검정기관을 지정해 다음 가축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가) 등록된 가축

나) 종계/종오리(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로부터 생산된 씨알 생산 목적으로 사육

5. 보호가축의 지정 등

- 시군구는 가축 개량, 보호를 위해 가축 보호지역과 보호지역내 보호할 가축 지정/고시 가능

-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는 보호지역내 가축